

행 정 자 치 부

훈계·시정 요구

제 목 ○○터널(○○측) 발생 암석 매각처리 등 추진 부적정

기 관 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훈계대상자 부산광역시 ○○○○ 지방○○○○○ ○○○

내 용

지방○○○○○ ○○○은 2015. 8. 3.부터 2016. 8. 2.까지 부산광역시 ○○
○○에서 ○○터널(○○측) 건설공사 업무를 담당하였다.

부산광역시 ○○○에서는 “○○터널 접속도로(○○측) 건설공사(○공구)”
를 2014. 11. 6. ○○○○ 주식회사(대표 ○○○)와 2개사와 계약(금액 55,275,000
천원)을 맺고 2020. 3. 11. 준공 예정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1. 공사현장 발생 암석 매각절차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절제3관 공사원가계산에 따르
면 계약목적물의 시공 중에 발행하는 가치 있는 부산물은 그 매각액 또는 이용
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르면 발파암의
경우에는 부동산과 그 종물로써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공고 등 계약절차를 준용하여 세입 조치하

여야 한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규정 등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에서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암에 대하여는 사토하는 비용과 매각하는 비용을 비교하여 매각하는 것이 유리하다면 공유재산법과 지방계약법에 따라 공개입찰 방식으로 온비드 등을 통하여 매각업체를 선정하여 처리하여야 했다.

그런데 부산광역시(○○○○)에서는 아래 【표 1】 과 같이 ○○터널 접속도로(○○측) 건설공사(○공구) 공사구간에서 발생하는 암 177,070m³에 대하여 암석을 필요로 하는 사업자를 상대로 공개 매각하는 것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10. 8. 관내 레미콘업체 등에 부적절하게 사토(발생암) 매입가능 여부 조회결과를 감리자에게 통보하여 발생암 처리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보고하도록 하였으며, 감리자는 제시된 업체의 의견 등을 검토하여 현장발생 암 처리업체로 ○○○○○○○(주)로 선정·승인요청 하였다.

그리고 위 관서에서는 2015. 10. 27. 실정보고를 승인하여 처리업체로 선정된 ○○리사이클링(주)는 1차로 현장발생 암 27,070m³를 사토장 인·허가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처리 하였으며, 2016. 5. 4. 골재채취 불법처리에 대한 민원이 제기 되어 확인한 바 ○○○○○○○(주)는 「골재채취법」 제14조에 의한 골재채취업 등록 미이행,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의 선별, 세척 또는 파쇄 등의 신고를 하지 않아 2016. 5. 9. 골재반출 중지를 하였다.

이 경우 ○○○○에서는 「골재채취업법」 제14조, 제19조, 제32조, 제32조, 제49조 등에 따라 골재의 선별, 세척 또는 파쇄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였을 때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이후에도 위 관서에서는 현장발생 암에 대해서는 온비드 등 입찰공고를 통한 공개매각을 추진하지 않고 토석정보시스템의 토석매각 공고를 통해 ○○○○ ○○○(주)를 매각업체로 선정하여 추가로 현장발생 암 150,000m³를 처리하는 등 공사현장 발생 암석 매각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 1】 현장 발생 암 매각 현황

공사명		매 각 현 황					비고
		재산명	수량 (㎡)	낙찰자	계약일 (공고일)	선정방법 (주관)	
1·2차 계			177,070				
○○터널 접속도로 (○○측) 건설공사 (○공구)	1차	발파암	27,070	○○ ○○○○○○ (주)	2015. 10. 27. 실정보고승인 2015. 10. 21. 실정보고(협의)	공문협의	
	2차	발파암	150,000	○○ ○○○○○○ (주)	2016. 8. 2. (2016. 7. 13.)	토석정보시 스템 입찰공고 (시공사)	
	잔여	발파암	344,869	미정	미정	공유재산법	

2. 골재채취 선별·파쇄 무면허 업체에 발파암(암석) 매각·처리

「골재채취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골재채취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

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암석, 모래 또는 자갈을 선별, 세척 또는 파쇄 하려는 자는 야적장 및 부대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지를 갖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르면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골재채취업을 경영한 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터널 접속도로(○○측) 건설공사(○공구) 공사구간에서 발생하는 암 매각업체로 선정된 ○○○○○○○○(주)는 건설폐기물처리 등록 업체였으나, 골재채취업은 등록하지 않은 업체였다.⁴⁷⁾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골재채취업 등록여부 및 골재선별·파쇄 신고 여부 등을 검토하여 현장발생 암에 대한 매각업체를 선정하여야 함에도, ○○○○○○○○(주)는 골재채취업 및 골재선별·파쇄에 대한 무등록 업체를 부당하게 선정하였다.

위 관서에서는 2015. 10. 21. 감리자가 제출한 발생암 처리계획에 대한 실정보고 승인 요청사항에 암 처리업체의 골재채취업 등록여부 등 선정업체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 없이 2015. 10. 27. 실정보고 승인함으로써 골재채취업 무등록자인 ○○○○○○○○(주)에게 현장발생 암(27,070m³)을 위법·부당하게 매각·처리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동 업체에 대해서 기장군에서는 「골재채취

47) 2016. 4. 6. ○○○구에 골재채취업 등록을 하였고, 뒤늦게 2016. 7. 8. 기장군에 골재선별·파쇄 신고를 하였음

법」 제49조 등에 따라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부산광역시장은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매각가치가 있는 잔여 발파암(344,869m³)에 대해서는 공유재산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라 매각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장군수는

[시정] 「골재채취업법」 등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골재 채취, 파쇄 선별 등 업체에 대해서 행정조치 등을 검토하여 적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